# 세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공인력 채용 공고(안)

2021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청년사회서비스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세종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 | 인원 | 직무 내용 |
|---|---|---|
| 서비스 운영 | 3명 |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및 관리(심리검사 해석상담 예정)<br>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행정업무 |

## 2.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인재개발원

나. 근무기간 : 채용 후 ~ 2021. 12. 31(주 20시간)

다. 급　　여 : 월 973,000원, 4대 보험 가입

라. 기　　타: 개인상담 및 접수면접 사례 배정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유자 및 수련생의 경우)

## 3. 지원 자격

가. 19 ~ 34세 청년으로 관련 전공 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관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및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성 관련 범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전력이 없는 자

## 4. 우대사항

가. 취업취약계층

1)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 120%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 34세의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4)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

6) 결혼이민자

7) 여성가장

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 전문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이상 자격증 등
- 신체건강 서비스 분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등
- 행정분야: 컴퓨터활용능력 등

## 5. 제출 서류

가. 접수기간 제출자 전원 : 임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경력증명서, 자격증,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에 한함

1) 가족관계증명원,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행), 서약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 기타 본교에서 안내하는 신규 임용자 제출서류 일체

## 6. 전형방법 및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접수기간 | 2021.9.16(목)<br>~ 2021.9.26(일) | 본교 직원채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br>http://gms.korea.ac.kr:8050/recruit/index_staff.jsp |
| 서류전형 | 2021.9.27(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면접전형 | 2021.9.29(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근무 예정일 | 2021.10.11(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전형일정은 학사 일정상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7.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하며, 합격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 문의 : 044-860-1941(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인재개발원 세종학생상담센터)